

# 이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활성화 조례

소관부서 : 공원녹지과

제정 2020·12·29 조례 제1666호  
일부개정 2023·3·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이천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이천목재문화체험장은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87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공예전시실, 목공예체험실, 목공예공방, DIY교육실 등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장 내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재료비”란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건의 비용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체험장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다양한 지식 제공
2.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3. 목재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그밖에 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관리 등)** ① 체험장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청 공원녹지과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3·6>

③ 시장은 체험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료, 재료비, 사용료 등(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을 면제 또는 일부를 감경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나 목적의 범위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체험장을 위탁할 경우 체험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목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체험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정리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체험장 근무일지
2.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강사)** ① 시장은 목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 외에는 매일 개장한다.

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휴장)
2. 1월 1일, 설 연휴, 추석연휴
3. 제2호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4.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09:00부터 17:0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조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9조(입장 및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전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화물질 등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혐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입마개를 부착한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5.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체험료 등)** ① 체험장의 입장은 무료로 한다.

② 체험장의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료가 있는 경우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③ 체험장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기관·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7. 이천시민(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재료비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이천시민에게 재료비의 30%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와 중복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13조(보험 가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체험장 내 시설에서의 사고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

**제14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수입금의 처리)** ① 시장은 체험료 등의 징수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 중 신용카드 결제 수입금은 매월 10일 세외수입 조치해야 한다.

**제16조(다른 조례의 준용)**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㉘ 「이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활성화 조례」 제5조제2항 중 “산림공원과”를 “공원녹지과”로 한다.

㉙ 및 ㉚ 생략

[별표 1]

##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제10조 관련)

구 분	내 용	금 액		비 고
		개 인	단 체 (20인 이상)	
대(大)품 (기계작업)	전동톱, 우드버닝기 등 기계를 이용한 작업	3,000원	개인체험료의 30% 할인	※ 재료비 별도 부과
중(中)품 (공구작업)	망치 등 간단한 공구를 이용한 작업	2,000원	”	
소(小) 품 (단순작업)	목공풀 등을 이용한 단순 작업	1,000원	”	

[참고사항]

1. 목공체험(대·중·소품) 기본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 체험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는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체험료 감경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3.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허용하지 않는다.

[별표 2]

## 목재문화체험장 사용료

(제10조 관련)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목공예체험실	1 ~ 4시간 이하	50,000원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부과
	5 ~ 9시간 이하	100,000원	

[참고사항]

1. 사용시간 동안 일반 체험이용객은 그 사용을 제한한다.
2. 시설물은 목재 관련 교육, 체험 및 문화행사 등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

(제5조제7항제1호 관련)

이천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			담당자	담당팀장	
년      월      일(요일)					
근무자	직명		성명	서명(날인)	
징수현황					
구분	인원/건	카드		계	인수자
체험료					(인)
특기사항					
주요인사 방문	행사	단체방문	고객 건의사항	그 밖의 사항	방문(관람) 수 명
시설점검사항					
전시관	DIY실	목공예 체험실	제재실	지하	외부
근무인원(명)					
목공지도사	강사	기타			
특이사항					



[별지 제2호 서식]

##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제5조제7항제2호 관련)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사용 기간	사용 목적	참석 인원 (명)	사용료 (원)	신청인		허가 여부	결재
						성명	연락처		

[별지 제3호 서식]

##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제10조제3항 관련)

사 용 시 설	목공예체험실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까지
		( 일 시간)		
사 용 목 적	행 사 명			
	행 사 일 시			
	참석예정인원			
	행 사 내 용			
행사진행책임자	성 명		휴대전화	
비 고				
<p>「이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활성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p> <p>* 무단으로 목공기계 사용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동의함 : 예( ), 아니오( )</p> <p>**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시 사용허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주      소    :</p> <p>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p> <p>              전 화 번 호 :                       </p>				
<p>이천시장 귀하</p>				